

## □ 사회복지사업법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 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  - 나. 「아동복지법」
  - 다. 「노인복지법」
  -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
  - 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  - 바. 「영유아보육법」
  - 사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 - 아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자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 - 차. 「입양특례법」
  - 카.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  - 타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
  - 파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  - 하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 - 거.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  - 너.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  - 더. 「의료급여법」
  - 러. 「기초연금법」
  - 머. 「긴급복지지원법」
  - 버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  - 서. 「장애인연금법」
  - 어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저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처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  - 커. 「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」
  - 터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페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  - 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